#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'20.2.27. (목) >

## □ 개요

○ **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**되고, **위기경보가 '심각'**으로 격상

- R&D 사업 추진시 ① **바이러스 확산을 예방**하고, ② **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**

## □ 현황 및 이슈

○ **1분기 내 선정평가, 연차점검 등 전문가 대면회의 집중 예정**

- 원활한 **전문가 섭외 우려,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** 필요

○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,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로 **연구공백이 예상**

- 기관 운영재개 및 격리 해제 등 **상황종료 후 안정적인 복귀 및 연구활동 지원 필요**

## □ 코로나19 대응방안(안)

○ **(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)**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(연차점검, 단계평가, 최종평가 등)는 평가일정 연기, ② **선정평가 등**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**화상,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**

※ 적용기간 : 위기경보 수준이 '심각'단계인 동안

- **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,** 발열·호흡기 증상 여부, 국내·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을 **사전확인을 거쳐 참석자 섭외**

· 회의 준비 및 진행 시 관련 지침*을 준수하고, 평가자 섭외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, 상피제** 예외 적용 검토

*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」 등

** (現)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, 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능. 단,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

- **장기적**으로 **주요 권역별 화상 평가시스템* 구축** 검토

  * 예시 : (서울) 연구재단, IITP - (대전) 연구재단 - (기타) 강원, 경상, 전라 등 권역별 주요 연구기관 및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지정

○ **(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) 감염병 예방을 위한**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**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**

- 국내·외 **위험지역 방문 자제** 및 **집단행사 개최 자제**에 따라 국내·외 프로그램 취소시, **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집행 가능**
-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**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**(손세정제, 일회용마스크 등) 집행 가능

○ **(연구공백* 발생시, 후속 연구 편의제공)** 위험상황 종료 후 **안정적인 연구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을 허용하고, 연구기간 연장**

  *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, 평가(연차점검, 단계평가 등)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일정 연기 등

- 과제 연차점검 등의 연기에 따라 **사업 추진일정이 연기된 경우,** 연구기관 폐쇄,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**연구공백 발생시,**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**과제 연구기간 연장 가능**
-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(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) 예외 인정

  ※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, 정밀정산 실시(처리규정 제29조제3항)
-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**연구 중단 및 재개,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**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**연구비 집행 허용**